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가단24341 구상금

원 고 ○○○○○○보험주식회사

피 고 ♧♧♧

변 론 종 결 2015. 3. 19.

판 결 선 고 2015. 4.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20,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9. 4. 22:30경 @@시 ~~~ 노상에서 충남@@파###호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 그로 인하여 □□□는 좌측 대퇴골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보험사업자인 원고에게 무보험상해담보에 의한 보험금으로 청구한 사실, 원고는 피해자측의 과실을 50%로 적용하여 149,008,810원을 피해자 □□□에게 지급하고 79,688,760원을 환입함으로써 결국 피고에게 69,320,050원의 구상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9,320,05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4개회~~~~호 사건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4. 12. 16.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개인회생채권으로 신청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소송행위로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으므로(이 사건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가 앞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